



『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개정에 따른
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

2024. 09. 05. (목)

서울주택도시공사

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

법무실장 : 조미숙 ☎3410-7913 송무부장 : 강기연 ☎7920 담당 : 이가은 ☎7922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사 정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시의회에 보고함.

I 관련 근거

○ 조례개정

-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 - ▶ 제21조 제1항 제22호 신설

○ 추진현황

- '24. 3.15. :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
- '24. 6. 7. : 서울주택도시공사 제399회 이사회 정관 개정(안) 원안 의결

II 추진경위

○ 정관개정 관련

- '24. 3.15.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
- '24. 5.30. “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” 수립
- '24. 6. 7. 제399회 이사회 개최
 - ▶ 「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」 개정(안) 원안의결

Ⅲ 주요 개정 내용

- 정관 : 사업의 범위(제6조 제1항) 제22호 신설
 - 조례 개정('24. 3.15.)으로 '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·관리 사업' 이 공사 사업수행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내용을 공사 정관에 반영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[시행2024. 3.15.]

제21조(사업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~21. (생략)
22.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·관리사업
23.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
② (생략)

Ⅳ 향 후 계 획

- '24. 8. : 정관 인가요청(SH공사 → 서울시)
- '24. 9. : 정관개정 시장인가(서울시)
- '24. 9. : 개정 정관 공포(SH공사)
 - ※ 참고사항



. 끝.

[붙임]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6조(사업의 범위)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21.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 <p>22.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</p>	<p>제6조(사업의 범위)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2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2.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·관리사업</u></p> <p><u>23.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</u></p>	
<p>〈신설〉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

◎ 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제 호

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개정

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1항 제22호를 “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·관리사업”으로 신설하고 현행 제22호를 제23호로 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